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25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정희용 · 박준태 · 고동진
최수진 · 김종양 · 주호영
안철수 · 김선교 · 김상훈
박충권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